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계획

1] 목적

- 제5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건설안전제도의 큰 영역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 계획서 대상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 및 대형사고 예방 시스템 작동의 내실화를 통해 '22년까지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 정부목표 달성에 기여

2] 세부 추진내용

- 일 시 : 2019. 7. 4.(목) 15:00~17:00
- 장 소 : 코엑스 317호(컨퍼런스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참석대상 : 발주·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본사·현장관계자 등 200명
- 주요 내용

세부내용		
시 간	주 제	발표자(진행자)
14:30~15:00(30')	등록	-
15:00~15:10(10')	인사말씀	기술이사
15:10~15:30(20')	건설안전 정책방향 설명	고용노동부 고광훈 과장
15:30~15:50(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발표1)	동아대학교 정지현 교수
15:50~16:10(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강화 방안(발표2)	대림산업(주) 허욱 상무
16:10~17:00(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 - 현장의 목소리 수렴 등 질의응답 * 진행자가 참석자와 패널 사이에서 토론 유도	- 토론 패널 - 산업안전과장/담당사무관 사업기획본부장 발표자(2명) 건설안전임원회장 계획서 작성 관계자

목 차

- **건설안전 정책방향 설명** 1
고용노동부 고 광 훈 과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5
동아대학교 정 지 현 교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강화 방안** 27
대림산업(주) 허 옥 상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 43
- **[참고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47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건설안전 정책방향 설명

고용노동부
고 광 훈 과장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동아대학교
정지현 교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2019. 07. 04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정 지 현



CONTENTS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I. 운영현황
- II. 실효성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
- III. 인식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 IV. 실효성 제고 방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현황

■ 개정내용

- 대상공사 - 5종→8종→6종으로 변경
- 제출서류 - 공사종류별 → 작업위험요소별 → 작업공종별
- 제출시기 - 공사착공 30일 전 → 공사착공일 전
- 자체심사 · 확인업체 제도에 대한 명칭 · 지정기준 · 심사 · 확인절차 및 재발생시 조치사항 등
- 작성용이성, 업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안전관계획서와 통합작성 · 제출 가능
- 지도사에 의한 계획서 평가 및 확인업무 신설

↓

제도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 이행용이성, 수용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 필요

3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현황

■ 수행단계별 절차 및 방법

작성 · 검토 · 제출

- 작성 시 현장실태 반영을 위하여 현장 관계자와 유사 현장 경험자 등을 참여진으로 구성하여 직접 작성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 (완전 외주 금지)
- 계획서 작성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청취 후 계획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에 제출 → 안전관계획서와 통합 작성하여 제출 가능
- 공사의 착공시기가 상이할 경우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 가능

↓

심사 · 확인

- 심사는 공단의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통보
- 확인
 1. 공단은 확인반을 구성하고 확인 전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확인 실시 → 적정, 조건부적정, 조치요청으로 판정 → 6개월 이내마다 1회 이상 공단 확인이 원칙이나, 위험작업의 경우 수시 확인가능
 2. 지도사 평가 및 확인
 3.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

이행

- 심사 후 작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이행
- 공사 수행 중 주요가설구조물 계획 변경 시 공사착수 15일 전까지 변경계획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현황

■ 대상별 심사 · 확인건수 및 재예발생연황

구분	심사계		높이	병동/생장 장고	교량공사	터널공사	댐공사	굴착공사
	확인계	사망계						
심사계 (검유율%)	30,714	18,586 (60.51%)	25 (0.08%)	723 (2.35%)	890 (2.90%)	12 (0.04%)	10,478 (34.11%)	
확인계 (검유율%)	83,583	46,922 (56.14%)	41 (0.05%)	5,144 (6.15%)	6,070 (7.26%)	92 (0.11%)	25,314 (30.29%)	
사망계 (검유율%)	812	504 (62.07%)	43	44	1	220	27	
2008년	1,729	1,036	29	32	632			
	7,265	3,981	480	469	10	2,325		
	72	43		2	27			
2009년	1,828	962	90	112	664			
	5,327	2,764	371	420	8	1,764		
	88	74						
2010년	2,354	1,270	129	144	2	809		
	6,375	3,031	587	628	5	2,124		
	83	63				20		
2011년	2,753	1,622	88	105	1	937		
	7,326	3,739	616	639	7	2,325		
	67	18	12	13	24			
2012년	2,655	1,672	70	75	3	835		
	7,603	4,322	572	590	19	2,100		
	65	39	4	5	17			
2013년	2,714	1,641	64	69	1	939		
	8,165	4,482	579	644	21	2,439		
	81	47	7	4	1	22		
2014년	3,260	2,000	2	72	88	2	1,096	
	8,775	4,846	559	771	5	2,594		
	90	45	9	6	30			
2015년	4,161	2,624	8	56	90	1,383		
	10,378	5,580	12	552	758	4	3,172	
	81	54	4	4	16			
2016년	4,637	2,924	9	54	76	1,574		
	11,174	6,325	18	464	652	5	3,110	
	97	60	3	4	30			
2017년	4,623	2,835	6	71	99	3	1,609	
	11,195	6,952	11	364	499	8	3,361	
	91	63	1	7	20			

- ▶ 높이 31m · 굴착 10m 대상공사
- 전체 심사의 29,064건(94.6%)
확인 72,236건(89.4%)
사망 724명 (89.2%)
- ▶ 17년에는 높이 31m 대상에서 전년 대비 사망재예 점유율이 61.9%에서 69.3%로 7.4%p증가
- ▶ 굴착10m 대상공사의 심사 · 확인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예는 증감을 반복

5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현황

■ 지역별 심사확인건수 및 인력배치연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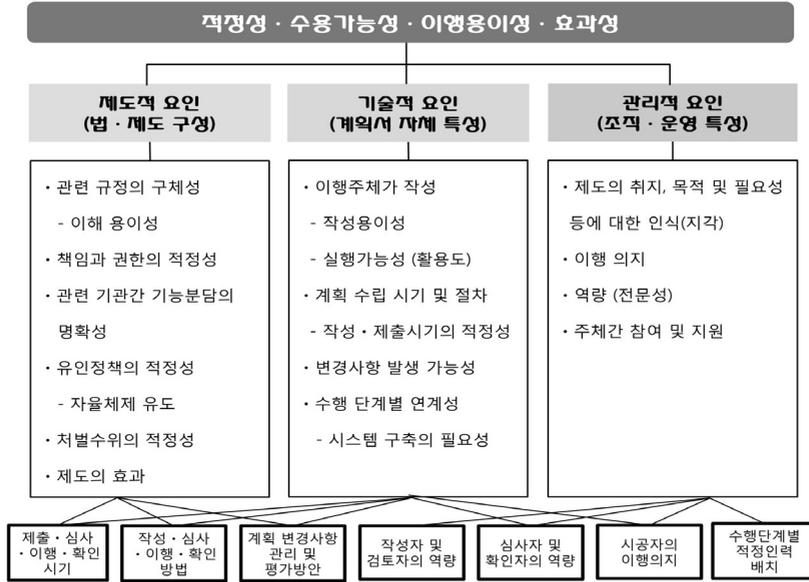
구분	계획서 진행 현황 수			심사·확인실적('18.7월말)			인력 현황 및 평균 심사·확인건수 ('18.7월말 기준)				
	'18.3.19.	'18.6.27.	증감	목표 (심사+확인)	심사 (건)	확인 (회)	건설 직원수	심사 직원	주요 확인자	1인당 심사건수	1인당 확인건수
합 계	4,750	5,098	348	16,000	2,473	7,307	162	66	127	37	58
서울본부 소 계	977	1,130	153	3,250	671	1,510	27	10	19	67	79
서울본부	581	671	90	1,870	442	847	11	4	7	111	121
서울본부	246	288	42	750	152	336	8	2	4	76	84
강원	66	82	16	280	38	153	4	1	4	38	38
강원본부 소 계	84	89	5	350	39	174	4	3	4	13	44
부산본부	888	932	44	2,750	375	1,197	27	9	24	42	50
부산본부	479	504	25	1,550	261	622	11	4	10	65	62
울산	127	142	15	370	36	192	5	2	5	18	38
경남	176	180	4	550	49	253	8	2	7	25	36
경남본부 소 계	108	108	0	280	29	130	3	1	2	29	65
광주본부	453	511	58	1,700	153	853	22	13	20	12	43
광주본부	107	132	25	435	37	221	5	3	4	12	55
전북	82	80	△2	240	18	153	3	1	3	18	53
전북본부	62	64	2	225	23	116	3	2	3	12	39
전남본부	71	72	1	260	28	129	4	3	3	9	43
전남	60	81	21	235	21	113	4	2	4	11	28
제주	71	82	11	305	26	116	3	2	3	13	39
충북본부 소 계	1,610	1,694	84	5,350	920	2,196	48	17	33	54	67
충북본부	310	329	19	1,120	138	361	9	3	5	63	72
경기	445	446	1	1,400	229	508	11	4	8	57	64
경기본부	292	313	26	900	139	472	9	3	6	46	79
경기본부	222	242	20	740	139	312	8	2	5	70	62
경기본부	194	198	4	670	104	272	6	3	5	35	54
경기본부	147	161	14	520	121	271	5	2	4	61	68
대구본부 소 계	355	351	△4	1,250	146	709	16	9	13	16	55
대구본부	114	124	10	400	74	187	5	3	3	25	62
대구본부	89	90	1	313	33	220	4	2	3	17	73
경북본부	66	55	△11	237	11	130	3	2	3	6	43
경북	86	82	△4	300	28	172	4	2	4	14	43
대전본부 소 계	467	480	13	1,700	208	842	22	8	18	26	47
대전본부	241	238	△3	710	91	311	8	2	6	46	52
충북	135	145	10	530	81	293	7	3	6	27	49
충남	91	97	6	460	36	238	7	3	6	12	40

6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

■ 실효성 영향요인



7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

■ 실효성 저해요인

- 작성 및 이행단계의 실행 주체 상이 - 외부기관 작성
- 본사 차원의 지원 미흡 - 사내 작성 · 검토자 부재
- 협력업체의 작성(지원)능력 미흡
- 작성 시간부족 - 계획서의 내실화 저해
- 현장 여건 반영 미흡 - 주요 공법 확정 및 현장조직 구성 전 계획 수립
- 현장 작성 인력 부족 - 공사수행 중 위험관리 및 변경사항 등의 관리 부재
- 참여 주체별 권한과 책임소재 불명확 - 필요 시적요건의 확인 수단으로만 인식
-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 - 발주자, 시공사 규제준수 의지 부족
- 작성 · 검토자 역량 차이발생 - 현장별 특성 등 미반영
- 심사 · 확인자 역량 차이발생 - 개인의 능력 · 경력 등의 정도에 따라 개예방 등의 요과 상이
- 체계(처별 수위)의 적정성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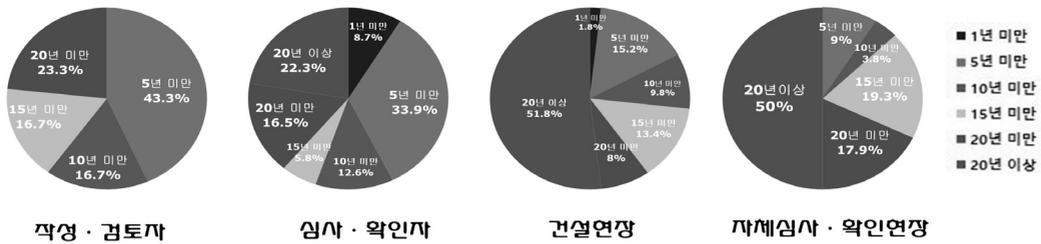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7. 08. 16 ~ 09. 14				
조사방법	우편, E-mail, fax				
조사대상 (배부)	작성·검토	심사·확인	작성·심사·이행·확인		합계
	재해예방전문기관 (88부)	공단 지역본부 (162부)	건설현장 (380부)	자체심사·확인현장 (267부)	897부
회수(율)	30부(34.1%)	103부 (63.6%)	112부 (29.5%)	78(29.2%)	323부 (36.0%)

■ 응답자 일반사항 - 근무경력



9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조사내용

설문구성	조사내용	조사대상		
		작성·검토	심사·확인	건설·자체
I. 응답자 일반사항	본사	·	·	·
	현장	·	·	·
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인식도	작성·검토	·	·	·
	심사·확인	·	·	·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행단계별 실태	작성	작성이 가장 어려운 항목	·	·
		작성할 때 중 가장 중요한 항목	·	·
		작성 시 가장 큰 어려움	·	·
		작성 시 가장 큰 이유	·	·
	검토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
		검토 시 가장 큰 어려움	·	·
		검토 시 가장 큰 이유	·	·
		검토 시 가장 큰 어려움	·	·
	심사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
		심사 시 가장 큰 어려움	·	·
		심사 시 가장 큰 이유	·	·
		심사 시 가장 큰 어려움	·	·
이행	이행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	
	이행 시 가장 큰 어려움	·	·	
	이행 시 가장 큰 이유	·	·	
	이행 시 가장 큰 어려움	·	·	
확인	확인 시 가장 중요한 사항	·	·	
	확인 시 가장 큰 어려움	·	·	
	확인 시 가장 큰 이유	·	·	
	확인 시 가장 큰 어려움	·	·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	

10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실효성 영양요인

단위 : 순위

구분	작성·검토	심사·확인	건설현장	자체심사·확인	평균
제출·심사·이행·확인 시기	5	5	4	5	4.50
작성·심사·이행·확인 방법	3	2	2	4	2.75
작성자와 검토자의 역량	2	4	3	2	3.00
심사·확인자의 역량	4	6	7	6	5.75
시공자의 이행의지	1	1	1	1	1.0
작성·심사·이행·확인단계별 적정인력 배치	6	3	5	3	4.25
계획 변경사항 관리 및 평가방안	7	7	6	7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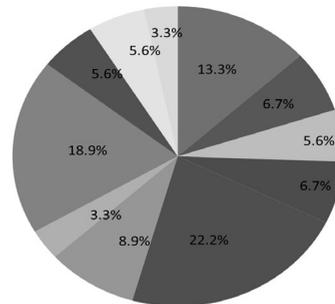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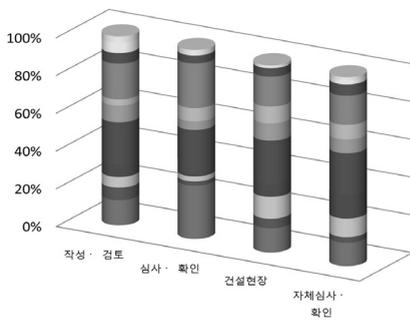
• 켄달의 일치계수 $W=0.814$, $p=0.004 < \text{유의수준} = 0.05$ 로 응답자간 순위결경이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실효성 저해요인



- 1. 작성 및 이행단계의 실행 주체 상이 (외부기관 작성)
- 3. 협력 업체의 작성(지원) 능력 미흡
- 5. 현장 여건 반영 미흡 (주요 공법확정 및 현장조작구성 전 계획 수립)
- 9. 참여주체별 권한과 책임소재 불명확(필요 자격요건의 확인 수단으로만 인식)
- 11. 체계(차별수위) 적정성

- 2. 본사 사원의 자원 미흡(사내 작성자·검토자 부족)
- 4. 작성시간 부족(계획서의 내일과 거여)
- 6. 현장작성인력부족(공사수행 중 위법관리 및 변경사항 등의 관리 부족)
- 8. 명시적인 절차라는 인식(규제문수 의지 부족)
- 10. 심사·확인자의 역량 차이 발생
(개인의 능력·경력 등의 정도에 따라 제애예방 등의 요과 상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규제순응도 - 적정성, 수용가능성, 이행용이성, 요과성 등에 대한 평가 필요

단위 : 응답자 수(%)

항목	규제인정										규제인정										합계				
	작성·검토		심사·확인		간설현장		자체심사·확인		합계		작성·검토		심사·확인		간설현장		자체심사·확인		합계						
	알고 있음	잘 모름	알고 있음	잘 모름	알고 있음	잘 모름	알고 있음	잘 모름	알고 있음	잘 모름	만족	불만족 (개선필요)	만족	불만족 (개선필요)	만족	불만족 (개선필요)	만족	불만족 (개선필요)	만족	불만족 (개선필요)					
작성·검토·제출	대상공사	20 (76.9)	6 (23.1)	100 (100.0)	-	90 (85.7)	15 (14.3)	70 (93.3)	5 (6.7)	277 (90.5)	29 (9.5)	19 (73.1)	4 (15.4)	3 (11.5)	83 (83.0)	11 (11.0)	6 (6.0)	96 (91.4)	3 (2.9)	6 (5.7)	65 (86.6)	5 (6.7)	5 (6.7)	263 (85.4)	20 (7.5)
	작성(검토) 내용	26 (100.0)	-	100 (100.0)	-	99 (94.3)	6 (5.7)	73 (97.3)	2 (2.7)	298 (97.4)	8 (2.6)	20 (76.9)	3 (11.5)	3 (11.5)	87 (87.0)	7 (7.0)	6 (6.0)	96 (91.4)	5 (4.8)	4 (3.8)	70 (93.3)	2 (2.7)	3 (4.0)	273 (89.2)	17 (5.6)
	작성자 자격요건	20 (76.9)	6 (23.1)	100 (100.0)	-	78 (74.3)	27 (25.7)	51 (93.3)	24 (32.4)	238 (77.8)	68 (22.2)	14 (53.8)	4 (15.4)	8 (30.8)	67 (87.0)	33 (33.0)	-	71 (67.6)	15 (14.3)	19 (18.1)	54 (72.0)	10 (13.3)	11 (14.7)	206 (67.3)	62 (38.7)
	검토자 자격요건	25 (96.2)	1 (3.8)	100 (100.0)	-	97 (92.4)	8 (7.6)	72 (96.0)	3 (4.0)	391 (95.1)	15 (4.9)	16 (61.5)	10 (38.5)	-	91 (91.0)	7 (7.0)	2 (2.0)	92 (87.6)	7 (6.7)	6 (5.7)	69 (92.0)	5 (6.7)	1 (1.3)	268 (87.6)	29 (9.5)
	작성 시기	26 (100.0)	-	100 (100.0)	-	103 (98.1)	2 (1.9)	72 (96.0)	3 (2.7)	301 (98.4)	5 (1.6)	19 (73.1)	4 (15.4)	3 (11.5)	85 (85.0)	9 (9.0)	6 (6.0)	87 (82.9)	1 (1.0)	17 (16.2)	59 (78.7)	3 (4.0)	13 (17.3)	250 (81.7)	17 (5.6)
심사	민원기관	26 (100.0)	-	100 (100.0)	-	103 (98.1)	2 (1.9)	73 (97.3)	2 (2.7)	301 (98.4)	5 (1.6)	23 (88.5)	2 (7.7)	1 (3.8)	90 (90.0)	5 (5.0)	5 (5.0)	95 (90.5)	3 (2.7)	6 (5.7)	68 (90.7)	2 (2.7)	5 (6.7)	276 (89.2)	12 (3.9)
	심사방법	25 (96.2)	1 (3.8)	100 (100.0)	-	100 (95.2)	5 (4.8)	73 (97.3)	2 (2.7)	291 (95.1)	15 (4.9)	18 (69.2)	5 (19.2)	3 (11.5)	92 (92.0)	7 (7.0)	1 (1.0)	94 (89.5)	7 (6.7)	4 (3.8)	70 (93.3)	1 (1.3)	4 (5.3)	274 (89.2)	20 (6.5)
	심사결과 및 조치	26 (100.0)	-	100 (100.0)	-	103 (98.1)	2 (1.9)	74 (98.7)	1 (0.8)	301 (98.4)	5 (1.6)	22 (84.6)	2 (7.7)	2 (7.7)	95 (95.0)	5 (5.0)	-	97 (92.4)	4 (3.8)	4 (3.8)	89 (89.3)	-	8 (10.7)	281 (91.8)	11 (3.6)
	지도사 평가 결과	24 (92.3)	2 (7.7)	100 (100.0)	-	76 (72.4)	29 (27.6)	54 (72.0)	21 (28.0)	249 (81.4)	67 (18.6)	16 (61.5)	8 (30.8)	2 (7.7)	80 (80.0)	17 (17.0)	3 (3.0)	98 (93.3)	3 (2.9)	69 (92.0)	3 (4.0)	3 (4.0)	263 (86.1)	32 (10.5)	
	이행 방법	26 (100.0)	-	100 (100.0)	-	103 (98.1)	2 (1.9)	75 (97.3)	-	303 (99.0)	3 (1.0)	3 (11.5)	2 (7.7)	2 (7.7)	81 (81.0)	18 (18.0)	1 (1.0)	98 (93.3)	6 (5.7)	1 (1.0)	69 (92.0)	2 (2.7)	4 (5.3)	269 (87.9)	29 (9.5)
확인	변경사항 발생시	23 (88.5)	3 (11.5)	100 (100.0)	-	94 (89.5)	11 (10.5)	63 (84.0)	12 (16.0)	277 (90.5)	29 (9.5)	20 (76.0)	2 (7.7)	3 (11.5)	76 (76.0)	16 (16.0)	8 (8.0)	88 (82.9)	4 (3.8)	13 (12.4)	60 (80.0)	-	15 (20.0)	245 (80.1)	22 (7.2)
	확인시기	26 (100.0)	-	100 (100.0)	-	103 (98.1)	2 (1.9)	72 (96.0)	3 (4.0)	300 (98.0)	6 (2.0)	18 (80.8)	8 (38.8)	-	83 (83.0)	13 (13.0)	4 (4.0)	94 (89.5)	6 (5.7)	5 (4.8)	65 (86.6)	2 (2.7)	8 (10.7)	260 (86.1)	17 (5.6)
	확인방법 (내용)	26 (100.0)	-	100 (100.0)	-	102 (97.1)	3 (2.9)	73 (97.3)	2 (2.7)	300 (98.0)	6 (2.0)	22 (84.6)	1 (3.8)	3 (11.5)	95 (95.0)	5 (5.0)	-	98 (93.3)	2 (1.9)	5 (4.8)	69 (92.0)	2 (2.7)	4 (5.3)	284 (91.8)	10 (3.3)
	확인결과	24 (92.3)	2 (7.7)	100 (100.0)	-	104 (99.0)	1 (1.0)	71 (94.7)	4 (5.3)	298 (97.4)	8 (2.6)	23 (88.5)	2 (7.7)	1 (3.8)	95 (95.0)	4 (4.0)	1 (1.0)	98 (93.3)	1 (1.0)	6 (5.7)	67 (89.3)	1 (1.3)	7 (9.3)	283 (92.5)	8 (2.6)
	제재	25 (96.2)	1 (3.8)	100 (100.0)	-	100 (95.2)	5 (4.8)	72 (96.0)	3 (4.0)	295 (96.4)	11 (3.6)	20 (76.9)	4 (15.4)	2 (7.7)	84 (84.0)	14 (14.0)	2 (2.0)	89 (84.8)	2 (1.9)	14 (13.3)	60 (80.0)	1 (1.3)	14 (18.7)	253 (82.7)	21 (6.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규제인정 -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 안

구분	내용
작성·검토·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 미비, 협력업체 구성 전 작성·제출로 인한 다수의 변경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후 본 공사 수행 전에 계획서 제출로 변경 ※ 협력업체의 전문성 강화로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다수의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실정 · 작성내용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공종별 자료를 보편화해서 보급 · 작성자의 전문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자의 실무경험·경력 등을 기준으로 등록제·인증제 실시 - 외주업체 역량 강화 및 검토자 검토의견 작성 의무화 - 협력업체(전문공종) 참여방안 마련 필요 · 작성·검토·변경사항 보안을 위한 공사관계자(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이 우선 - 다수가 계약직이며 업무부담이 명확하지 않음 · 검토자의 검토의견 작성 의무화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시기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심사 - 착공 전 - 본심사 - 실제 시공계획 수립 후 - 변경사항 심사 · 변경사항 발생 전 사전승인 의무화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제재의 근거 마련 · 변경사항 이력관리 의무화 · 발주자의 책임 강화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시 안전관리자 이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을 참여토록하여 권한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형사고 위험작업 현장 확인 시 전문성 강화 · 확인 시 적정인력 확보를 통해 현장 여건(공사자체 특수성, 공사기간 등)을 반영한 확인주기 조정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 참고자료 배포 · 양방향 소통계획서 접수, 결과 통보 등 전산화구축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규제순응도 - 규제준수

항목	규제준수																			
	작성·검토					심사·확인					건설현장					자체심사·확인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작성·검토·제출	대상공사 작성(검토) 내용	-	3 (11.5)	10 (38.5)	4 (15.4)	9 (34.6)					1 (1.0)	5 (4.8)	37 (35.2)	48 (45.7)	14 (13.3)	1 (1.3)	2 (2.7)	31 (41.3)	26 (34.7)	15 (20.0)
	작성자 자격요건	3 (11.5)	4 (15.4)	10 (38.5)	3 (11.5)	6 (23.1)					4 (3.8)	16 (15.2)	44 (41.9)	33 (31.4)	8 (7.6)	3 (4.0)	5 (6.7)	33 (44.0)	25 (33.3)	9 (12.0)
	검토자 자격요건										1 (1.0)	2 (1.9)	46 (43.8)	41 (39.0)	15 (14.3)	1 (1.3)	4 (4.0)	3 (4.0)	26 (34.7)	29 (38.7)
제출 시기	작성 전									2 (1.9)	2 (1.9)	44 (41.9)	42 (40.0)	15 (14.3)	1 (1.3)	2 (2.7)	25 (33.3)	24 (32.0)	23 (30.7)	
	분리 제출									3 (2.9)	1 (1.0)	52 (49.5)	36 (34.3)	13 (12.4)	1 (1.3)	2 (2.7)	30 (40.0)	24 (32.0)	18 (24.0)	
	민원기한						1 (1.0)	-	13 (13.0)	16 (16.0)	70 (70.0)					1 (1.3)	2 (2.7)	26 (34.7)	29 (38.7)	17 (22.7)
심사	심사방법 (내용)						4 (4.0)	1 (1.0)	18 (18.0)	20 (20.0)	57 (57.0)					2 (2.7)	1 (1.3)	28 (37.3)	31 (41.3)	13 (17.3)
	심사결과 및 조치						-	2 (2.0)	18 (18.0)	28 (28.0)	52 (52.0)					1 (1.3)	1 (1.3)	26 (34.7)	32 (42.7)	14 (20.0)
	지도사 평가						5 (5.0)	6 (6.0)	26 (26.0)	19 (19.0)	44 (44.0)									
이행	이행 방법																			
	변경사항 발생시																			
	확인시기						1 (1.0)	1 (1.0)	12 (12.0)	25 (25.0)	61 (61.0)					1 (1.3)	3 (4.0)	25 (33.3)	31 (41.3)	15 (20.0)
확인	확인방법 (내용)						2 (2.0)	1 (1.0)	14 (14.0)	28 (28.0)	55 (55.0)					1 (1.3)	2 (2.7)	29 (38.7)	29 (38.7)	14 (18.7)
	확인결과						1 (1.0)	2 (2.0)	19 (19.0)	24 (24.0)	54 (54.0)					1 (1.3)	1 (1.3)	30 (40.0)	27 (36.0)	16 (21.3)
	계재						5 (5.0)	5 (5.0)	24 (24.0)	18 (18.0)	48 (48.0)									

※ ☒는 해당사항이 아님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작성단계 - 작성방법

단위 :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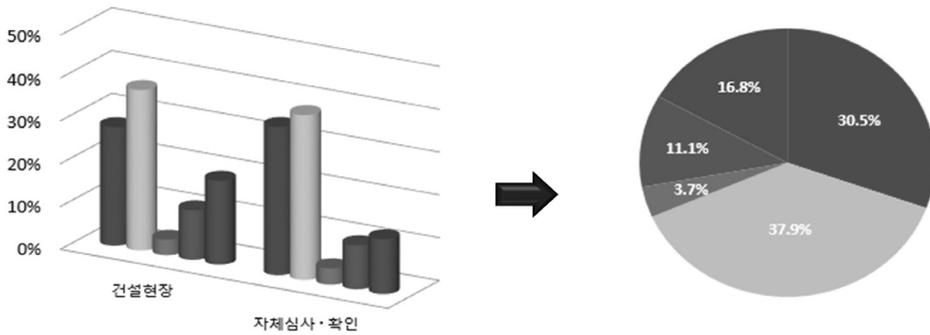
구분	건설현장	자체심사·확인	합계	
자체 작성	현장소장	3(2.7)	2(2.6)	5(2.6)
	안전관리자	5(4.5)	1(1.3)	6(3.2)
	본사 담당자(팀)	5(4.5)	7(9.0)	12(6.3)
	소계	13(11.7)	10(11.9)	23(12.1)
해당 공종을 도급받은 협력업체 작성	4(3.6)	1(1.3)	5(2.6)	
외부 위탁	적극참여	27(24.1)	22(28.2)	49(25.8)
	요청사항 지원	44(39.3)	26(33.4)	70(36.8)
	기관의 전문성 신뢰 (전적으로 위임)	8(7.1)	2(2.6)	10(5.3)
	소계	79(70.5)	50(64.2)	129(67.9)
위 방법 병행	자체+협력업체	2(7.1)	2(2.6)	4(2.1)
	자체+외부기관	12(1.8)	13(16.7)	25(13.2)
	협력업체+외부기관	-	1(1.3)	1(0.5)
	자체+협력업체+외부기관	2(1.8)	1(1.3)	3(1.6)
	소계	16(14.3)	17(21.9)	33(17.4)
합계	112(100.0)	78(100.0)	190(100.0)	



- 작성 시 외부기관 완전 위탁 금지 사항 다수 미인지
- 작성자, 이행자(시공사) 불일치 - 연장여건 미반영(사전조사 소홀, 공사연왕 파악 미흡 등)
- 제출 시 작성자, 검토자 동일인 경우 발생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작성단계 - 외부 전문기관 위탁의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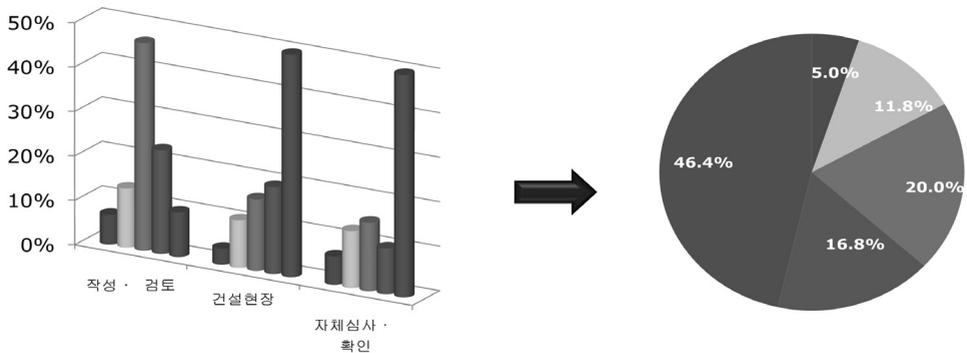


- 1. 작성인력 및 시간부족
- 2. 작성의 어려움
- 3. 심사 시 수월해서
- 4. 작성 검토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 5. 통합작성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이 가능해서

17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작성단계 - 기본취지 부합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



- 1. 작성자의 자격요건
- 2. 작성자의 권한과 책임사항 명시
- 3. 작성·제출시기 개선
- 4. 전문교육과정의 강화
- 5. 현장인력 중심의 작성 유도 방안 마련

18

Ⅲ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심사단계 - 주요한 심사기준

단위 : 응답자 수(%)

구분	심사·확인	비고
계획서 작성의 기본 취지 및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12(11.7)	
계획서 이행범위의 구체성	9(8.7)	
계획서 수립내용의 적정성(작성지침의 준수)	11(10.7)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지원 사항	1(1.0)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현장여건의 반영	33(32.0)	
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	
현장소장의 계획서 준수 의지	37(35.9)	
첨부서류 내용의 누락 여부	-	
합계	103(100.0)	

- 실질적인 현장여건 미반영
- 공사착공 전 현장 조직 미구성으로 실질적인 작성자가 심사에 미참여
- 심사 이후 현장소장 선임 또는 변경多
 -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전달 미흡 → 확인단계 이행력 꺾어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Ⅲ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이행단계 - 계획서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

건설현장 자체심사·확인

- 1.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아서
- 2. 공사 중 변경 내용이 많아서
- 3. 활용할만한 내용이 없어서
- 4. 사고방지/안전관리 의지의 부족
- 6. 품질관리 등 타 업무로 인해 바빠서
- 7. 안전관리자 권한 미흡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I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도 및 실태조사

■ 확인단계 - 확인 시 연장 이행 일지도

단위 : 응답자 수(%)

구분	심사·확인		비고
	매우 일치	비교적 일치	
매우 일치	1(1.0)	34(33.0)	
비교적 일치	33(32.0)		
보통	37(35.9)		
불일치	26(25.3)	30(31.1)	
매우 불일치	6(5.8)		
합계	103(100.0)		

■ 확인단계 - 확인 시 불일치 이유

단위 : 응답자 수(%)

구분	심사·확인	비고
제출기한 촉박으로 인한 현장 사항 고려 미흡	6(18.8)	
작은 공사계획 변경	6(18.8)	
이행 조직의 잦은 인력 변동	4(12.5)	
변경사항의 계획서 미반영	9(28.1)	
기타 (계획서와 실행 사항의 조건이 많이 상이하여 각각 대응이 어려움)	7(21.9)	
합계	32(100.0)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실효성 제고방안

항목	개선방안 세부내용	작성·검토		심사·확인		건설업체		자율심사확인		합계	순위
		소계	순위	소계	순위	소계	순위	소계	순위		
작성·검토·제출	계획서 심사현황 및 재해발생 실태 등을 반영하여 계획서 작성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한다.	124	3	431	5	444	3	318	1	1317	3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업계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88	16	327	16	424	8	300	6	1139	15
	계획서 작성자·검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91	15	422	9	434	5	285	12	1232	9
제출	현장 실무자 참여확대 및 자체작성 유도를 위하여 작성지침을 개정한다.	118	6	446	3	433	6	313	3	1310	4
심사	심사 시 계획서 작성규정의 이행·현장여건 반영 여부 등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계획서 작성자·검토자 및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시공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124	3	468	1	447	2	308	4	1347	1
	계획서의 대입(현장사항·고려)을 위하여 검사 기기를 제공한다. ex) 예비심사-착공 전 본심사 - 실제 시공계획 수립 후 변경사항 심사 - 변경사항 발생시	105	12	375	15	416	13	299	7	1195	12
이행	계획서와 실제 작업내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협력업체 등 이행 관계자의 작업 확정 후 계획서 변경 및 재심사 등을 통해 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113	10	395	13	418	12	290	10	1216	11
	공사 중 시공계획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획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홍보 및 변경사항 이력관리를 의무화한다. ※ 선결과제 - 변경사항의 범위 설정, 이력관리 체계	112	11	397	12	405	14	274	14	1188	13
	현장 자체 확인 체계 정착을 유도하여 공사 수행 중 위험요인의 발굴을 통한 재해예방으로 이행력을 강화한다.	116	8	430	6	441	4	306	5	1293	6
	계획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133	1	457	2	424	8	291	9	1305	5
	사업주,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안전문화)고취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22	5	389	14	433	6	293	8	1237	8
계획서 자체작성, 변경작업 및 대형사고(붕괴·도괴·화재·폭발) 위험작업들의 사전통보, 확인 및 개선결과 제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일합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118	6	423	8	420	11	286	11	1247	7	
확인	제출된 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102	13	443	4	356	16	234	16	1137	16
	확인 시 공단의 적정인력 배치로 자공사의 이행력을 고취한다.	97	14	429	7	394	15	253	15	1164	14
사후관리	대형사고 위험작업에 대한 확인 시에는 화재·보건·기계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확인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14	9	407	11	424	8	283	13	1228	10
사후관리	무수한 계획서의 경우 대상공사, 작업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 시 참고토록 한다.	133	1	417	10	459	1	318	1	1327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작성 대상공사 개선(안) - 연계적 장애예방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행	개선(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생략 1. ~ 6. 생략 7. ~ 8. 신설 ③ ~ ④ 생략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지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철거·해체공사</u> 8. <u>리모델링 공사</u> ③ ~ ④ 현행과 같음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철거에게 공사 장애 유형

- ▶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구조물의 붕괴와 관련
- ▶ 철거장비 - 공법선정과 관련
- 철거에게 공사 수행 전에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
- 작업 중 증격야중, 진동 등에 의해 손상되는 부분을 진단해 가면서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적용에 나가야 하므로 전문 철거업체, 진단 및 설계능력이 있는 구조 엔지니어와의 압동작업이 매우 필수적

• 리모델링의 특성

- ▶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 상 작업의 복잡성, 접근성의 곤란, 설치공간 및 자재적치공간의 부족
- ▶ 기존 시설의 운영일정이 공사일정과 충돌할 경우 갑작스런 작업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곤란
 -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 → 장애(사고)
- ▶ 기존 시설이 당초 도면과 다르게 사용자들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많고, 건물이력 카드 등 기존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 많음
 - 시공 중 변경사항의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음
-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확보가 곤란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현행	개선(안)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①~④ 생략 ⑤ 개조 및 해체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조공사는 건축물, 인공구조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의 "대수선 공사"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신설 다. 신설 라. 생략 마. 생략 2. 해체공사의 경우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가. 신설 나. 신설 ⑥~⑦ 생략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리모델링 및 해체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리모델링공사는 건축물, 인공구조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등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의 "대수선 공사"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수반되는 부분해체의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다. 기존 인원이 상주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 해체공사는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것으로 전면해체 및 부분해체를 의미하며, 공사방법에 있어 발파해체 및 기계식해체를 포함한다. 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이상의 전면 해체공사의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②항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구조물의 해체공사의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작성·검토자의 심사단계 참여(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현행	개선(안)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① 공단의 심사·확인 1. ~ 3. 생략 4. 공단은 심사회의 일정통보 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가 대형사고 예방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중점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의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 ~ 21. 생략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① 공단의 심사·확인 1. ~ 3. 현행과 같음 4. 공단은 심사회의 일정통보 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실질적인 계획서 작성자) 가 대형사고 예방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에 따른 중점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의 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계획서 검토자는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 ~ 21. 현행과 같음



- 실제 이행자(시공사)가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우대 방안 고려
- 작성자, 검토자의 참여 기여도 확인 가능
 - 작성규정의 이행, 연장여건 반영 여부 및 심사준비 사항 등
- 심사 후 계획서 보완 내실화 및 확인단계 이행력 강화

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건설사업관리자의 계획서 사전 검토 의무 활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5조(안전관리)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제4항) 5. ~ 8. 생략	제22조(안전관리) ③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계획의 수립 대상에 한정한다) 3. ~ 10. 생략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계획서 관련 단계별 발주자 책임사항(사업계획-설계시행-공사발주-공사시행)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해야 함

2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변경사항 관리 (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현행	개선(안)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① 착공기준 1.~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① 착공기준 1.~3. 현행과 같음 4. 계획서 비 대상공사 현장에서 시공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계획서 비 대상공사 연장에서 시공 중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기준 신설

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변경사항 관리 (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현행	개선(안)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② 계획서 주요 내용 일의 변경에 대한 대응 강화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② 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에 대한 이행 확인 강화
통지문구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 변경 시에는 해당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우리공단에 변경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공사진행 하기를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u>작업중지 요청</u>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통지문구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공법 변경 시에는 착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에 따라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이 3미터 이상 비계, 총고 6미터이상 거푸집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지보공,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3미터 이상 비계, 높이 6미터이상 거푸집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지보공, 높이 2미터이상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계획서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주요 가설 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



- 가설구조물에 대한 변경사항 多
- 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대상 명확화(계획→공법)
- 공단 사전검토에서 계획서 확인 시 우선 검토로 변경

29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변경사항 이력관리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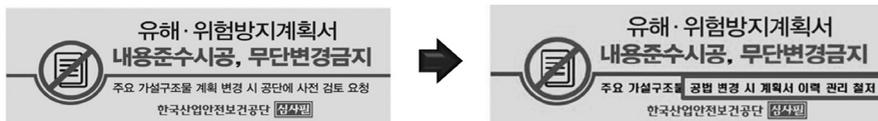
[별지 제00호 서식]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

NO.	가설구조물	공법변경 주요내용	계획서 변경사항 요약	개정일 (개정차수)	개정쪽 (page)	관리책임자 검토	
						성명	서명

[별표 8]

심사필 표지 및 표시방법



30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확인주기 개선 (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현행	개선(안)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② ~ ④ 생략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심사 시 확인주기를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동일 기준 적용) ② ~ ④ 현행과 같음



공사 자체의 특수성, 공사기간, 공정진척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 수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확인주기 조정

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대형사고 위험작업의 확인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현행	개선(안)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① 공단의 심사·확인 1. ~ 17. 생략 신설 18. 확인자는 심사위원이 지정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작업시기에 대해서는 현장 측과 상호 협의하여 확인주기 단축을 통해 그 위험작업 시기에 맞추어 확인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확인주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 ~ 21. 생략	제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① 공단의 심사·확인 1. ~ 17. 현행과 같음 18. 확인자는 계획서 확인 시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심사위원이 지정한 대형사고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작업시기에 대해서는 현장 측과 상호 협의하여 확인주기 단축을 통해 그 위험작업 시기에 맞추어 확인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확인주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확인 시 화재·보건·기계 등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현장 측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9. ~ 21. 현행과 같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단계에서 대형사고 위험작업(와재·폭발·무너짐·넘어짐 등)으로 지정된 경우, 현장여건 및 위험성 정도에 따른 확인단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

3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계획서 통합업무 전산화 시스템 단계별 설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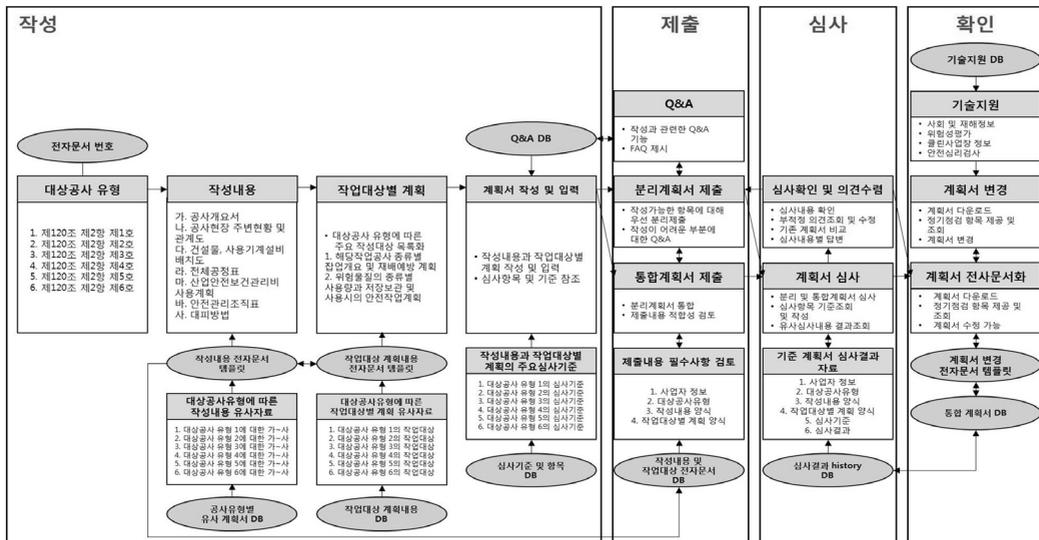
	작성	제출	심사	확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예시 활용 참조를 통한 자체작성 촉진 작업별 구분 작성을 통한 제출의 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작업마다 전자문서의 sheet별로 분리 제출 가능 인력공법 확정 후 단위작업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시 주요내용 저장 및 활용 가능 심사내용의 출력 및 배포를 통한 정보공유 편리 심사내용 데이터의 처리 및 변화, 분석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 소통 기능으로 위험작업 시기 알림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한 안전개선 및 의식 향상
시스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공사유형별 작성내용 예시 예시 참조 및 작성내용 입력 심사항목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의 작업공종별 분리 가능(문서의 sheet 추가 분리 가능) 작성항목별 문의 기능 심사위원 및 전문가 선정 제출내용 적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내용 통합 및 검토 심사내용 History 조회기능 유사 계획서 심사 결과 참조기능 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서 전자문서 공유 및 수정기능 계획서 확인내용 점검기능 사고재해통계 및 중대재해사례 조회 및 입력 기술지원항목(위험성평가, 법령자료 등) 문의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공사 유형 필드 항목별 유사작성내용(가-사 항목) 참조 필드 작업대상별 계획서 유사내용 참조 필드 심사항목 및 기준 필드 항목별 작성내용 입력 필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 정보 pool 전자문서-sheet별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작성 시 문의사항(Q&A) 입력 필드 구축 제출내용 필수사항 주요 키(key)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sheet별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작성 시 문의사항 입력 필드 구축 제출내용 필수사항 주요 키(key)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서 출력 기능 및 수정 기능 체크리스트 형식 변환 페이지 작성 재해통계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술지원항목 자료 DB 연계

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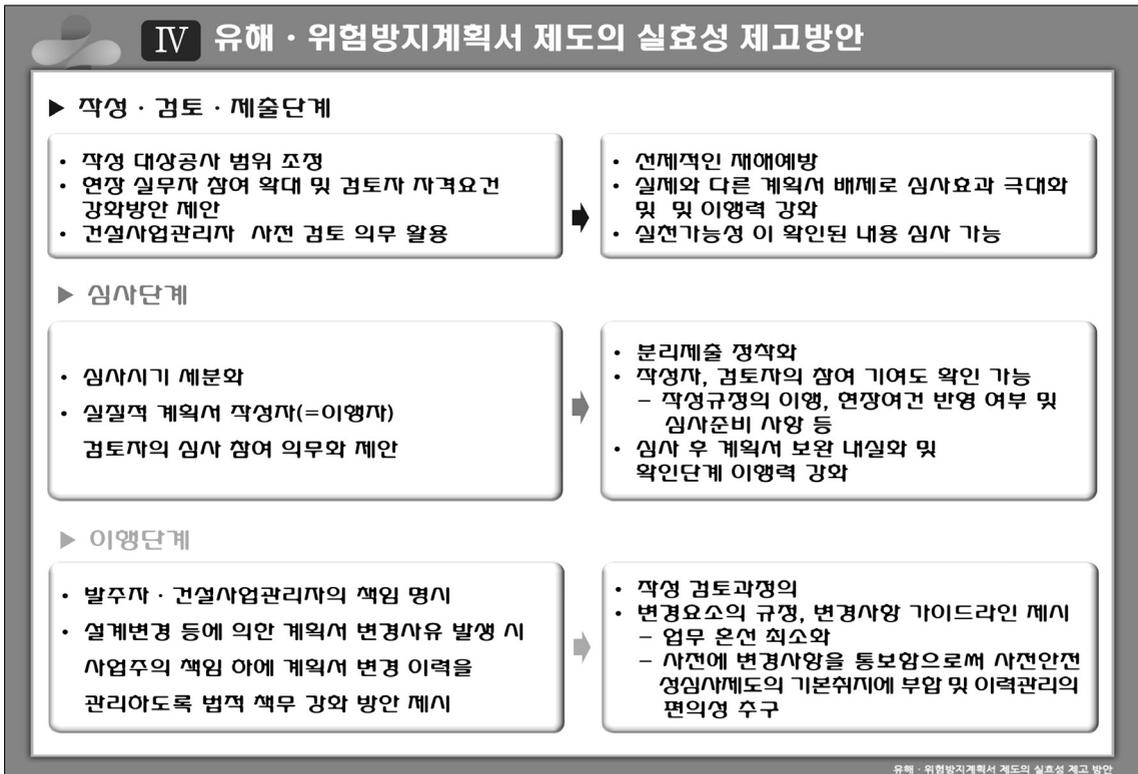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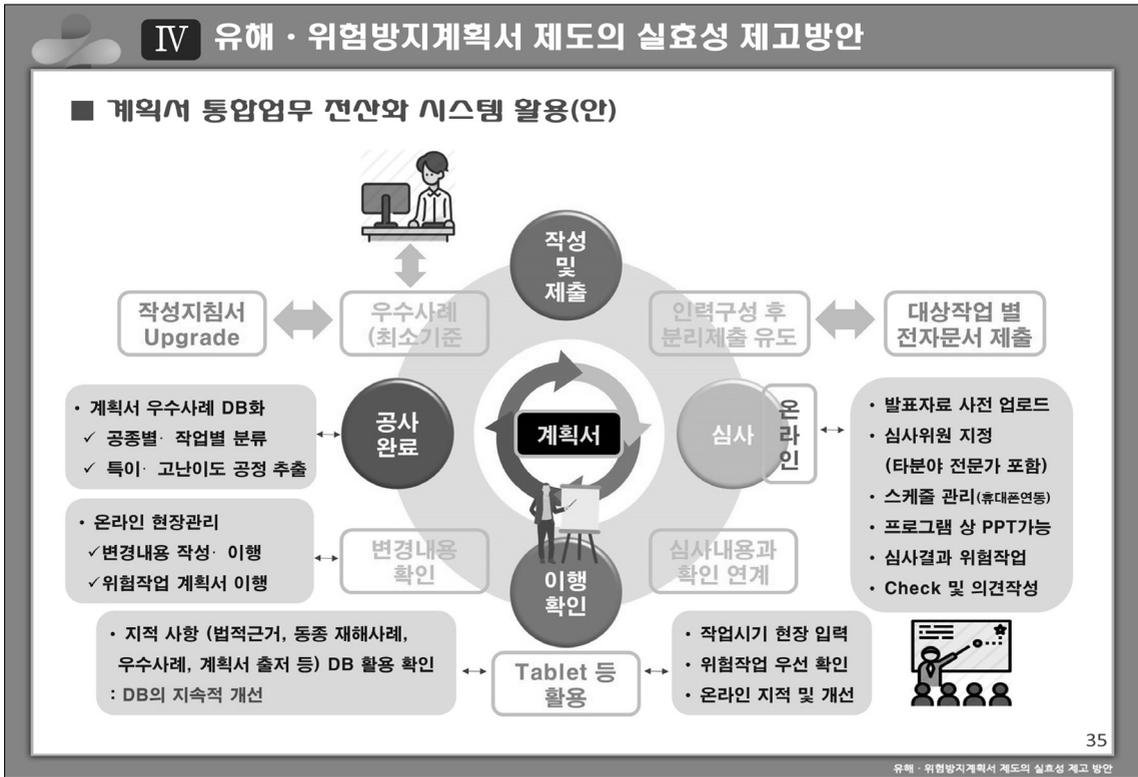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계획서 통합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방안



3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IV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확인단계

- 공사 자체의 특수성, 공사기간, 공정진척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 수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확인주기 조정
- 건설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 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영영조치 기준 검토 제한

- 대형사고 위험작업 현장 확인 시 전문성 강화
- 소규모 건설현장 실효성 제고
- 시공단계 이행력 고취

▶ 선결과제

- 계획서 통합 업무 전산 프로그램 구축
- 관련 주체별 전문성 강화

- 업무 편의성(양방향 소통가능)
 - 자체 작성, 분리제출 및 서류간소와 등
- DB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 수행단계별 신뢰성(만족도) 제고

사전안전성평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서 자체 특성 및 조직·운영상의 특성에 대한 이에
 재개발영 연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이행 단계별 P-D-C-A 기반 구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현장작동성 강화 방안

대림산업(주)
허 옥 상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방안

2019년 7월 4일
대림산업(주) 허 옥 상무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목 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2. 유사 계획서 비교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제점
4. 현장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방안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개선 방안
6. 결언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 정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1990년 부터 도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 대상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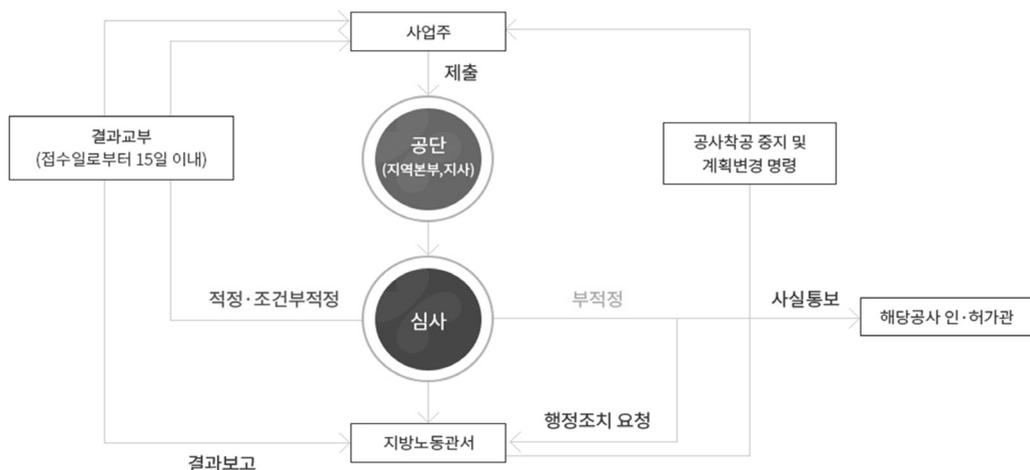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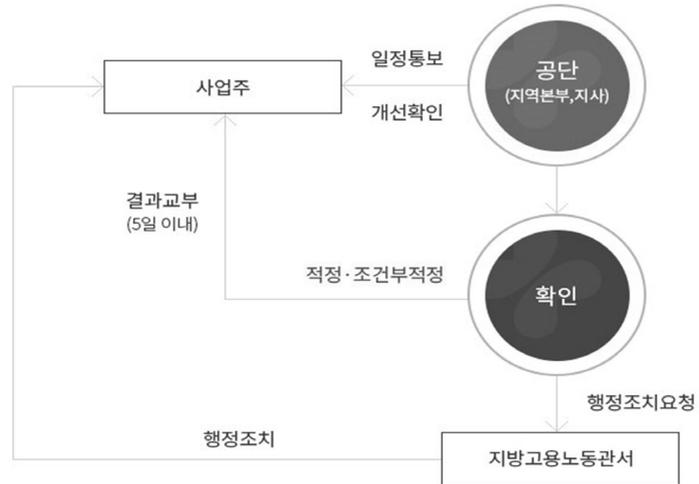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 확인절차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2. 유사 계획서 비교

2. 유사 계획서 비교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 목적 : 공사목적물의 품질을 높여 안전 확보



•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제출/승인

- ✓ 1층 시설물 및 2층 시설물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높이10m 이상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사용
-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 ✓ 지하 10m 이상인 굴착공사
- ✓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 (비계 31m 이상 등)

• 심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 대상공사 (실)착공 전 공단 제출 / 승인

-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 교량건설 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 터널건설 공사
 - ✓ 댐건설 공사
-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DAELIM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제점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제점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현장이 아닌 외부 전문업체에서 작성
- ✓ 착공에 필요한 서류로만 인식 (현장 활용도 떨어짐)
- ✓ 실제 계획을 실행할 관리감독자 검토 미 실시 (관리감독자 참여 부족)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행을 위한 개정관리 미흡 (관리주체 불명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실행력 부족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① 대상 공사별 실착공 전 심사

As-is



착공 전 대상 공사 전체에 대한 심사
(공법 미결정 등으로 형식적 작성)

To-be



대상 공사 실착공 심사
(실제 작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가능)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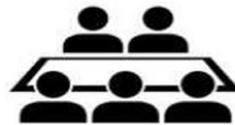
② 심사회의 방법 개선

As-is



장소 : 안전보건공단
참여 : 현장소장

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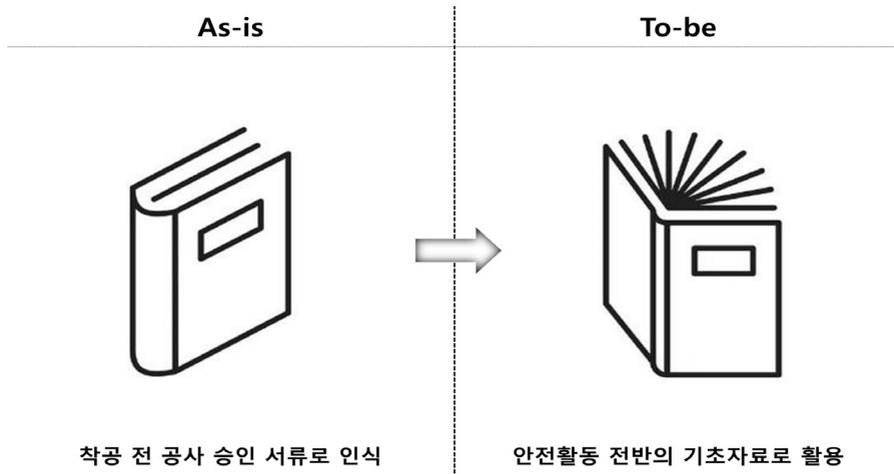
장소 : 현장
참여 : 소장 + 관리감독자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③ 계획서 활용 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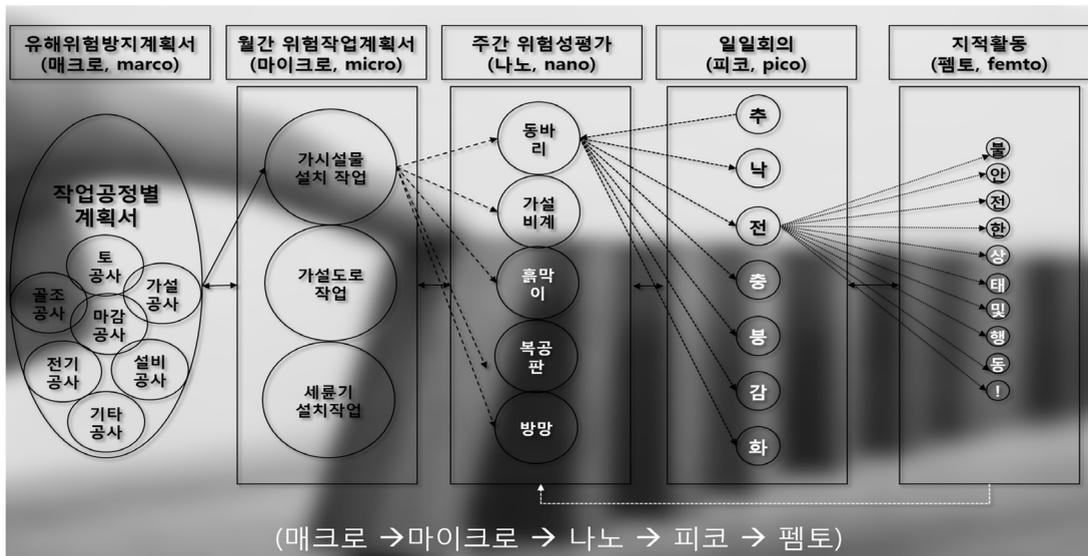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③ 계획서 활용 방법 개선 _ 계획서를 세분화하여 안전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력 Up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④ 검토 및 관리 주체 명확화

As-is



검토 및 관리 주체 불명확

To-be



관리감독자 직무에 포함하여 검토 및 운영
(체계적 관리)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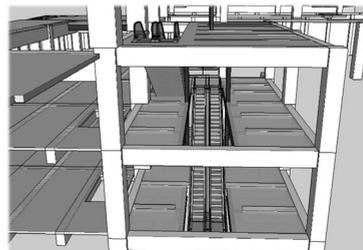
⑤ 주요부위 도면을 3D 변경

As-is



2D 도면 (이해도 부족)

T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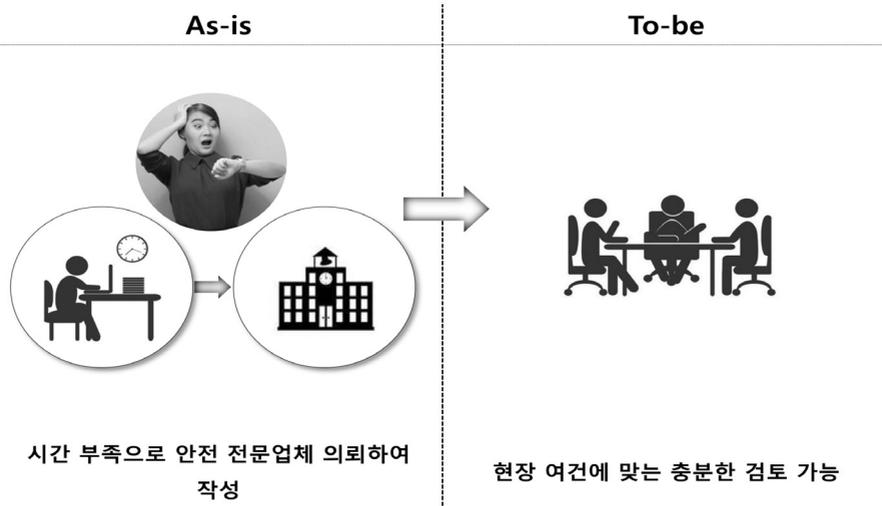
3D 도면 (주요부위) : 활용성 제고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4.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

⑤ 인허가기관 착공 서류 목록 제외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 기준 개선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 개선

As-is	To-be
<p>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재해율 우수업체</p> <p>○ 지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 직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재해가 없어야 함 <p>○ 지정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제외 : 동시에 2명이상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 ※ 사망재해 1명 발생 시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안전공단 확인 재개 	<p>3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업체</p> <p>○ 평가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및 점검의 날 행사 참여 -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안전보건조직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확보된 업체 지정을 통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내실화 도모 -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 유도 <p>○ 지정 및 해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6. 결언

“무재해 운동”의 3원칙

무Zero의 원칙

선취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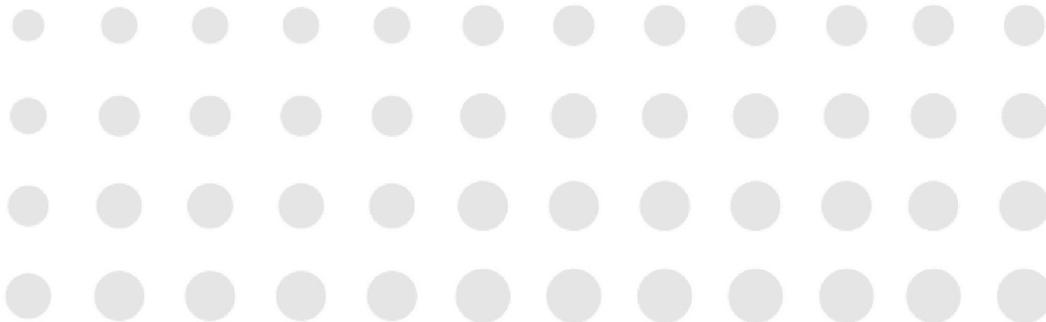
안전하세요!

이 정보(문서)는 대림산업의 자산으로서, 허가 없는 사외반출을 금지합니다.

DAELIM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중토론







건설업 사고사망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동성 및 실효성 강화

[참고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가 목 적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

나 법령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부터 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까지

다 대상공사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종교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
2.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라 제도 변천

구 분	개 정 내 용
'90. 1. 13 (산안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도입
'91. 2. 18 (고시 제정)	○ 고시 제정 후 공단에서 계획서 접수·심사·확인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91-15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고시내용 : 계획서 첨부서류 및 작성기준,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규정
'96. 12. 31 (산안법 개정)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서 작성·제출
'97. 10. 16 (시행규칙 개정)	○ 계획서 첨부서류 및 작성기준 등 상세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관련고시 폐지)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 도입
'99. 8. 28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를 8종 → 5종으로 축소 ※ 잠함공사, 고정크레인 사용 공사, 기타 유해·위험작업 공사 등 3종 폐지 ○ 제출서류 변경 : 공사종류별 → 작업위험요소별 ○ 제출시기 변경 : 공사착공 30일전 → 공사착공 전일
'00. 9. 28 (시행규칙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통합 작성·제출
'03. 7. 7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 확대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자율안전관리업체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확인 실시
'05. 8. 1 (시행규칙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도 도입 - 최근 1~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에 대하여 확인주기를 3개월 또는 6개월에 1회에서 6개월, 1년 또는 2년에 1회로 조정 적용
'07. 1. 12 (시행규칙 개정)	○ 제출서류 변경 : 작업위험요소별 → 작업공종별(위험성평가 도입)
'07. 12. 31 (시행규칙 개정)	○ 자율안전관리업체 현장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 시 다음연도 지정 제외
'08. 09. 18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 명확화 ①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등
'09. 8. 7 (시행규칙 개정)	○ 제출 대상공사 확대 5종 → 6종으로 확대 ① 연면적 5,000㎡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 등 ② 연면적 5,000㎡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1. 3. 3 (시행규칙 개정)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변경 -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 → 상위 20% 이내 - 동시 3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 시 즉시 지정 해제 ○ 재해율 우수업체 확인주기 완화제도 폐지 ○ 확인주기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일원화
'12. 1. 26 (시행규칙 개정)	○ 지도사에 의한 계획서 평가 및 확인업무 신설
'14. 3. 12 (시행규칙 개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등 개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개선(공단의 지도·조언 신설)

마 제도의 주요내용

(1)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별지 제26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

※ 자체심사자 기준(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이상 이수한 자

- 다음의 일정규모 공사의 경우 위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평가**를 받고 **공사착공 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3 서식과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심사로 갈음 가능**

※ 지도사에 의한 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대상(시행규칙 제122조,제124조)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 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가능한 지도사 기준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첨부서류

-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3) 심사

- 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구분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 서식의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보

(4) 확인

-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실시

※ 확인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 적정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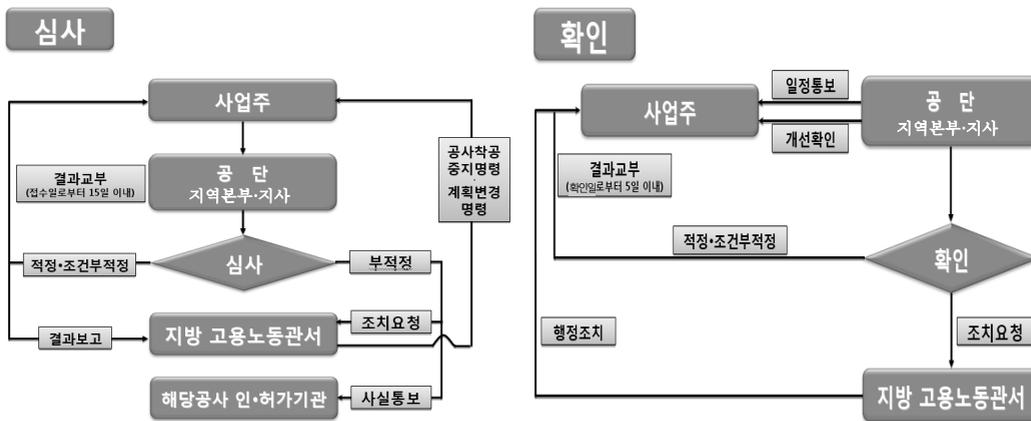
※ 공사 중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의 확인 실시

단, 상기조건 사망재해 중 다음 재해는 제외

- 고혈압 등 개인지병으로 직접원인이 사업주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방화,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공사 차량·장비는 제외),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제3자 과실, 진폐, 기타(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등) 중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

- 지도사 평가를 공단의 심사로 갈음 한 경우로써 지도사 확인 예정일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향후 공단이 확인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법정 확인기한 도래 전에 지도사 확인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의 확인을 생략하고 대체 가능
(기한 미준수 또는 검토결과 부적합 시 15일 이내 공단 확인 실시)

(5) 심사 및 확인 절차



(6) 제출서류(계획서 첨부서류 : 산안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관련)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가.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 서식)
- 나.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라. 전체공정표
-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 서식)
 -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 작성
- 바. 안전관리조직표
- 사.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주요 작성대상	첨부 서류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비계만 해당)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법(무지주공법으로 테크플레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벽체를 포함] 조립 및 해체 작업 또는 비탈면 슬라브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라. 철골 및 PC(Precast Concrete) 조립 작업 마.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바. 밀폐공간내 작업 사. 해체 작업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을 포함]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비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 계획 포함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제1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공사	가. 밀폐공간내 작업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다. 설비 작업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가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화재 및 폭발 예방계획이 포함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량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하부공 공사 3. 상부공 공사	가. 하부공 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2)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3) 교대·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 작업 4) 해상·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나. 상부공 작업 가) 상부공 가설작업[암굴공법(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 나)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다) 상부슬라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 포함)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가. 터널굴진공법(NATM) 1) 굴진(갱구부, 분선, 수직갱, 수직구 등) 및 막장내 붕괴·낙석방지 계획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3) 환기 작업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 사용 작업 나. 기타 터널공법[(TBM) 공법, 쉴드(Shield) 공법, 추진(Front Jacking) 공법, 침매공법 등을 포함] 1) 환기 작업 2) 막장내 기계·설비 유지·보수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나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굴진(갱구부, 분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내 붕괴·낙석방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나. 댐 축조(가(假)체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흡생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만 해당)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 공사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작업(복공작업을 포함)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다. 양중기 설치·연장·해체 작업 및 천공·항타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 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제도

가 목 적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나 지정 기준

-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직전 3년간의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 ※ 다만,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 즉시 지정에서 제외 및 다음 연도에서 지정 제외
(사망재해 1명 발생 시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공단에서 확인 재개)
- 지정대상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 ※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29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 지정기간 : 해당연도 8. 1 ~ 다음년도 7. 31일 까지(1년간)

다 혜택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가능
 - ※ 자체심사자 기준(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이상 이수한 자
 - ※ 자체확인 : 자체심사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한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확인 결과서(별지 제26호의9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비치

라 연도별 지정업체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11	'12	'13	'14	'15	'16	'17	'18
대상업체 수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지정업체 수	81	95	72	70	74	69	40	40	34	37	39	39	39	37